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14
----------	-------

발의연월일 : 2025. 7. 2.

발 의 자 : 조배숙 · 김석기 · 최보운
강선영 · 김대식 · 조은희
임종득 · 박정하 · 박준태
장동혁 · 신동욱 · 김예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피해자와 달리 스토킹피해자에 대해서는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스토킹피해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토킹행위자가 소송 등을 통해 스토킹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방지하여 스토킹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의”를 “제6항 및 제7항의”로, “가정폭력피해자등”을 “가정폭력피해자등 및 스토킹피해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가정폭력피해자등”을 “가정폭력피해자등 및 스토킹피해자”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제1호 중 “제6항에”를 “제6항 및 제7항에”로, “제7항 및 제8항에”를 “제8항 및 제9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까지의”를 “제11항까지의”로 한다.

⑦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스토킹피해자”라 한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게 제2항제2호에 따른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 ⑥ (생략) <u><신설></u>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스토킹피해자”라 한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톱킹 행위자에게 제2항제2호에 따른 스톱킹 피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⑦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제한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⑧ ----- -----제6항 및 제7항의----- ----- -----가정폭력피해자등 및 스톱킹피해자----- ----- -----. ----- -----.

⑧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 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⑨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2. (생략)

⑩ (생략)

⑨ -----

-----가정폭력 피해자등 및 스토킹 피해자-----

-----.

⑩ -----

-----.

1. 제6항 및 제7항에-----

-----제8항
및 제9항에-----

2. (현행과 같음)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 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제11항까지의----- ----- ----- ----- ----- ----- ----- -----.
--	--